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이종배·박덕흠·성일종

박형수 • 이성권 • 김성원

강승규 · 김예지 · 김용태

엄태영 · 이종욱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%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.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,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.

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

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4조의15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"을 "다음"으로, "100분의 3"을 "100분의 5 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"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4조의15(해외자원개발투자에 | 제104조의15(해외자원개발투자에 |
| 대한 과세특례) ① 「해외자원 | 대한 과세특례) ① |
| 개발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| |
|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(이하 | |
| 이 조에서 "해외자원개발사업 | |
| 자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4호 | |
|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 | |
| 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| <u>다음</u> |
| <u>12월 31일까지 다음</u> 각 호의 |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| |
|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| <u>100분의 5(중견기업</u> |
| 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 | 의 경우에는 100분의 7, 중소기 |
| <u>의 3</u>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| <u>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</u> |
|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| |
|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 | |
| 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| |
| 해당한다)에서 공제한다. 다만, | |
|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 | |
| 회사(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| |
|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 | |
| 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 | |
| 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| |
| 같다)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 | |

| 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| |
| 러하지 아니하다. | |
|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